

**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148
제출일자 및 제출자	2018년 3월 29일, 천영미 의원 등 27명
상정일자	제32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(2018년 4월 10일 상정, 의결)
심사결과	원안가결
주요 내용	•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(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 조의3 신설)

교육위원회

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8년 4월 일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3월 29일, 천영미 의원 등 27명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4월 3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(2018년 4월 10일 질의/답변, 토론 후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영미 의원)

가. 개정이유

- 가. 학교체육관리 및 선수 관리체계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한 학교운동부 관리시스템 운영과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,
- 나.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받기 위한 예방 대책 강구와 학교운동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학교체육관리 및 선수 관리체계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한 학교운동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제2항).
- 나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(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).
- 다.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·지도자·학교·학교운동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 각 호의 신설).

3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: 박춘금)

※ 검토보고서 요지 -----[별첨 1]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첨부서류

: 개정 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----- [별첨 2]

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수석전문위원 : 박 춘 금

□ 검토의견

I.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

-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, 비용추계, 해당부서 의견 조회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.

II. 예산 및 비용추계

- 해당사항 없음

III.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

- 입법예고 : 제출의견 없음
- 관련부서 협의 :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

IV. 조문별 검토의견

- 안 제3조제2항은 학교체육관리 및 선수 관리체계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한 학교운동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매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. 현재, 학교운동부에 대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NEIS시스템에 기 반영되어 운영중에 있음.
- 제3조의 2는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업성취, 학교운동부 운영 상태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통계 관리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학생선수들의 인권 보호 및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항으로 판단됨.
- 안 제4조에서는 학생선수, 학생운동부지도자, 훈련비,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비 지원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학교체육 지원 예산 배분 과정에서 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의미있는 개정으로 판단됨.

V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체육관리 및 선수 관리체계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리시스템 운영과 학교운동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여 학생선수의 인권 및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됨.

경기도 조례 제 호

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학생선수”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.
5. “공공스포츠클럽”이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학교운동부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체육관리 및 선수 관리체계의 과학화를 도모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2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업성취, 학교운동부 운영 상태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고,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 중 “선수·지도자·학교·학교운동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”를 “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
2.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
3.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비 지원
4.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 <u>4. “학생선수”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.</u> <u>5. “공공스포츠클럽”이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.</u>
제3조(학교체육 진흥) ① (생 략) <u>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 <u><신 설></u>	제3조(학교체육 진흥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학교 운동부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체육관리 및 선수 관리체계의 과학화를 도모한다.</u> 제3조의2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업성취, 학교운동부 운영 상태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 <u>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고,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.</u>
제4조(지원)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<u>선수·지도자·학교·학교운동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4조(지원)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<u>1.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</u> <u>2.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</u> <u>3.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비 지원</u> <u>4.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